

사탕방 자료

등록일	A4 - 208	
	17 4-1	208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모은 자료집 1.

이 땅의
올바른 교사로
서기 위하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연구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토론 자료집 1.

이 땅의
오늘바른 교사로
서기 위하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연구부

이 자료집은 교육부의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에 즈음하여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돕고자 단국대학교 사
범대학 특수교육과 비상대책위원
회 연구부에서 제작·편집한 것입
니다.

장애아동, 부모님, 현장교사, 그
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들의 작은 노력과 결의들이 장애
아동들의 교육권확보를위한 싸움
에서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1993년 11월 10일

연 구 부

목 차

들어가는 말 ----- 6

장애아동 교육권확보에 대한 법제적 접근
----- 16

1.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외국의 특수교육관계 주요법규
5. 법적대응을 위한 제언
6. 특수교육진흥법과 정부개정안 및 공대위안 비교분석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기회의균등과 보장
----- 50

1. 허용적 평등에 입각한 기회균등
2. 교육의 보장에 있어서의 평등
3.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4. 통합교육

5. 사정위원회

6. 대안

장애아동조기 의무교육을 위한 제언

----- 58

1. 조기의무교육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장애아동 조기교육의 현 상황
3. 외국의 조기교육 실태
4. 우리나라 조기교육의 문제점
5. 해결방안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와 관련한 특수교육재정의 문제점 분석

----- 68

1. 현행 교육재정의 운용
2. 지방 교육자치와 (특수) 교육재정

올바른 특수교사양성과 자격제도확립을 위한 제언 ----- 78

1. 특수교사양성과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현행 특수교사 양성제도와 임용제도
3. 특수학급 운영 실태
4. 각 대학별 교과과정
5. 외국의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6.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근무에 관한 요소 변인
7. 보수교육 시행령에 관하여
8. 올바른 특수교사 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제언

들어가는 말

Kelly는 그의 저서 「특수교육의 철학적 전망」(1971)에서 특수교육의 철학적 연구에 관한 세 가지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특수교육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공적기능이어야 하는가?

둘째, 특수교육과 일반교육과의 상호관련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셋째, 특수교육은 어느 정도로 공적 책무성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교육이 그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 있어 특수교육은 그 이념, 내용, 목적, 방법 및 조직에 있어 민주주의적 이상과 원형에 의해 특징지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수교육이 민주주의적 이상과 원칙에 따라 실현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모든 장애아동에게 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공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일이다.

다음으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같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간의 교류, 통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Reynold도 '특수교육의 역사는 거부의 시대에서 보호시설의 시대로, 보호시설의 시대에서 분리교육의 시대로, 분리교육의 시대에서 통합교육의 시대로 발전해 오고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철학적 이념의 정당성은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에서 보여 주듯이 그 실천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행정부재와 소수집단 경시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세번째 질문의 대답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늘날 수혜자의 입장에서 공교육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에 대해 효과적인 수행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교육의 분야, 특히 특수교육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 장애아동 의무교육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오늘날 우리사회는 평등의 이상을 선언하고 이를 근대화의 지표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회내에서의 불평등은 평등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의미를 '동일'과 '획일'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일치가 없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이 야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ewey나 Rawls등은 차등의 원리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Rawls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 사회정의의 실현은 더 좋은 조건하에 있는 유리한 이점을 지닌 사람들이 더욱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는데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의 교육이상은 차이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참된 사회균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는 불리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Dewey의 사회복지론, Rawls의 정의사회론은 장애아동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만이 정의와 평등을 위한 민주적 도덕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인간존중사상을 토대로 한 평화주의, 문화주의, 인도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인간평등의 원칙에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성의 신장과 사회에의 바람직한 참여로써 사회적으로 복지를 행복으로 살리는데 그 이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학령장애인구 중 20%만이 교육을 받음 (정부, 행정체신위원회 보고서, 장애인복지제도개선방안, 1993)으로써, 장애아동의 70% 이상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나미, 윤점룡, 특수학급의 효율화 방안,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9).

이는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제시되어진 기회균등사상과 동법 31조 1항에 제시되어진 교육기회균등에 대한 권리조항에 비추어보아 명백히 헌법의 기본 개념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 (1991)에서는 이러한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권 확보와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대한 건의를 했었으나 실제 입법이나 행정에 있어 뚜렷한 결과물들을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이번 국회에 제출된 특수교육진흥법 최종 개정안 속에는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보장에 관한 조항이 단지 무상교육만으로 제시되어짐으로써 실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법에서도 98조에서 유예단서조항을 제시해 놓음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도외시키고 있다.

누구에게나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에 있어서 교육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은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취학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방법·조직·환경 등 전반적인 면에서의 기회균등까지를 포함하

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은 당연한 것이며, 진작부터 이루어졌어야만 했을 것들임을 알 수가 있기에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요구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2. 조기의무교육에 대하여

장애의 위험이 있는 신생아, 영아 및 유아에 대한 조기에방과 조기 처치를 위해서는 철저한 의학적·특수교육학적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특수교육계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들이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1989년 발간한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거의 모든 장애아동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1년에 한국특수교육협회에서 발간한 '특수교육요람'에 의하면 전국의 공·사립 특수학교 유치부는 100개 학급이 설치되어 752명의 장애아동이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1> 전국 특수학교 유치부 아동취학 현황
(한국특수교육협회, 1991, p.6)

장애 유형	공립특수학교 (국립 포함)	사립 특수 학교	계
시각 장애	13	12	25
청각 장애	69	190	259
지체 장애	13	65	78
정신지체	177	194	371
정서 장애	0	19	19
합 계	272	480	752

<표1>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유치부에서 조기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특수아동은 불과 752명뿐이다. 더욱이 가장 출현율이 높은 정신지체아동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겨우 371명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조기교육 기회의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뚜렷이 나타내 주고 있다.

조기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수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으므로

해서 알수는 없으나 위의 표로 미루어 보아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기회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것은 조기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 시기'가 그 효과적인 면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조기교육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이 충분하게 입증되고 있다. 장애에 방과 치료의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 특히 조기에 장애가 발견되어지고 그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령기 장애아동의 수는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장차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이를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조기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의무교육 확립과 열악한 조건의 조기교육기관들에 대한 제도적·법적 지원체제의 확립을 말한다.

3. 통합교육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Reynold는 "특수교육의 역사는 거부의 시대에서 보호시설의 시대로, 보호시설의 시대에서 분리교육의 시대로, 분리교육의 시대에서 통합교육의 시대로 발전해 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교육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이념들의 정당성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조기교육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다.

장애아동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통합에 있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경우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여러나라와 그 외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추구해가는 특수교육의 목표이다. 모든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바로 사회통합이 특수교육의 최고 목표인 것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나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하다면 장애아동들도 또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일반학교에 통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식으로의 단계적·절차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관련 서비스들 - 순회교사의 배치, 경사로나 화장실등의 편의 시설 제공 - 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4. 사정위원회에 대하여

장애아동들에 대한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와 교육, 그리고 기존의 장

애아동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평가와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적 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을 진단·평가할 있는 기구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이번 공대위 안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진단·평가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띤 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위원회가 더욱 적합한 말이기여 여기서는 사정위원회라 사용하기로 한다).

현재는 사정위원회가 각급 학교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까닭에 장애아동의 입학에 있어 많은 비리와 부정을 자아내는 은상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수학교를 재수하여 이 학교 저 학교를 돌아다니다 결국은 학령기를 놓쳐버리는 진풍경이나 충분히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장애정도에도 불구하고 악법 조항 (교육법 98조) 으로 인해 일반학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해 올바른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이에 합당한 배치를 하게끔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진단·평가기구의 제도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평가 기구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통합교육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특수교사양성과 자격제도에 대하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104개의 특수학교가 설립 (1990) 되어 있으며, 특수학급의 경우 3,248개가 개설 (1991)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수교육 전공교사의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29.2% 에 불과 (1993) 하여 대부분의 특수학교나 학급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 검정고시 출신이나 무자격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들의 교육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방치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수교육은 흔히 일반교육의 상위개념으로 인식되어진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이에 합당한 교사 양성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비단 아동에게 제시되어지는 교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동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이해도에도 관련되어진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과의 학제나 교과과정으로는 그 전문성을 담보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빈약한 교과과정과 현장성이 결여된 이론 중심의 강의로는 이러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전문적 기능을 습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120 - 336 시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교육으로 특수교사자격증이 주어지는 보수교육에 관한 령을 발표했다. 이는 위의 사실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면, 특수교육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물론, 或者는 일반교육의 상위개념으로서의 특수교육을 이야기하며 일반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타당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그 선행바탕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한 뚜렷한 이해와 교육목표인식, 그리고 교사양성과정 동안에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특수교육 제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해속에서 구체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아동에 대한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이라는 것 이전에는 아동 개개인의 인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지고 있으므로, 특수아동에 대한 오랜 이해의 시간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짧은 시간동안의 개론적인 전공과정의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소양까지 갖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보수교육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 월 3만원의 수당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특혜, 특히 가산점에 있어서는 승진을 위한 편법으로 자주 사용되어짐으로 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가산점은 일반교사의 특수학급 유인책으로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만 사용되어져 오히려 교내 인사상의 문제점만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했으며, 특수학급담당 비전공교사 -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교사, 자격검정고시 출신 - 들의 90%이상이 자신의 직책 (특수학급 담당교사) 에 대해 멋떳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보수교육이 앞에서 언급했던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추게 하는 데는 적절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아동도 국민의 한사람이다. 그들도 다른 아동들과 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서어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바르게 이끌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 또한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교과과정과 제반 환경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수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함양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교과과정을 갖춘 전문적인 교사양성제도의 확보가 필요로 된다는 것이며, 진정으로 장애아동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않도록 부작용만을 초래하고 있는 가산점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현재 전국의 6개 대학의 8개 특수교육과의 상황도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단계적인 계획으로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

과과정과 제반여건의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제의 6년제 개편등의 제도적 보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6. 교육제정에 대하여

교육제정의 확보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교육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수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4%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봉도, 특수교육제정의 개선방향, 1988).

이러한 교육부문,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재정보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에 있어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시행이나 이에 따르는 제반 시설확충, 교권의 확보 등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사회복지전반에 있어서 국가재정중립의 복지정책과 수익자부담 위주의 복지정책이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두 정책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 내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형식적·전시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百年之大計라 했다. 그러나 기간의 교육행정·예산정책은 이러한 기본전제를 무시하고 그때그때마다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의 졸속행정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는 먼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가들의 식전에서 나온 수치스러운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비적인 것이 아니다. 교육은 생산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그 생산성을 확보하고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배양된 능력들이 이후 사회로 다시 환원되었을 때는 그 효율성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실제로 나와있다.

행정가들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입안과 장애아동교육에 대한 무지가 하루 빨리 깨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글에서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조기교육과 통합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선행되어야 할 진단·평가 기구의 필요성, 현행 특수교사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금번 교육부의 보수교육을 통한 특수교사 자격증제도의 문제점등에 관하여 간략한 언급을 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과 이후 개선방향들은 자료집의 이후 부분에서 잘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자료집을 보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정부 제출안 속에서의 의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의 중요성이다. 오늘날 수혜자의 입장에서 공교육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에 대해 효과적인 수행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장애아동이나 그 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 속에 무상교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졌음 - 을 요구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법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며',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들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들이다.

둘째,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후의 자료들 속에서 조기교육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들과 - 장애에 방의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학령기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는가 - 아동의 발달상에 있어 조기의 교육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교육과 조기교육, 통합교육이 서로 독립되어진 것들이 아님을 알고 이 세가지 간의 관계가 현재는 어떠한가,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에 어떠한 효과를 지닐지도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네째, 사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이다. 사정이라함은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정도와 그에 기인하여 요구되어지는 능력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적 조치와 그러한 교육적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되어졌던 통합교육이나 조기교육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 (Assessment) 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가 아동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기반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는 어떠한 형식·어떠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과 조기교육, 그리고 통합교육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이러한 이해의 틀속에서 이러한 사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현행 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금번의 교육부령에 의해 시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보수교육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이다. 이후 자료에서 제시되어진 현행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제도와 보수교육, 그리고 비교자료로 제공되어진 여러나라의 교사양성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의 특수교사 양성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동시에 금번의 보수교육에 관한 령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제시되어야 할 올바른 교사양성제도는 어떠한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함양해야 할 특수교사로서의 구체적인 전문성과 자질은 어떠한가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는 특수교사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교육부의 보수교육에 대한 부당성 시비를 가리는데도 중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의 필요성이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금번 교육법 개정안의 98조에서는 또다시 중증 장애아동들을 교육의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러한 교수프로그램을 지도할 교사 - 순회교사 - 의 확보와 배치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 내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들에게는 생활중심의 교육과 장애정도에 따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을 전제로 하는 기초적인 기능교육과 직업교육이 필요로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속에서 더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그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이는 심신장애인 복지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개별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아동들은 물론이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개별화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개인간의 특성과 능력의 격차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한 장애아동의 경우 집단지도와 같은 현재의 교수방법만으로는 소규의 교수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실여건에 관한 여러가지 제반 환경들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적정 학급당 인원수, 교재·교구의 지원, 학교행정내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장학 활동, 적절한 개별화교수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관련 서어비스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자칫하면 우리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기가 쉽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인간존중의 기본철학 속에서 다시 조명되어져 할 사람들이다.

여덟째,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다. 현재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를 지닌 기초적인 수작업들로 일관되어져 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러한 직업교육으로는 장애아동의 직업교육이 단순한 형식적·전시행정적 소산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직업교육만을 받은 장애아동들이 사회현장에 나갔을 때 그 기능·기술 - 직업교육의 열악함으로 인한 단순기능, 동료들과의 상화작용에 있어서의 문제들 - 상의 문제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장애아동들을 위한 현장감있고 시대적 조류에 적절한 구체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명시가 장애아동교육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장애아동들의 사회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상호보완적인 법률적 제도화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공업화로 인한 지나친 능력주의가 팽배해짐으로써 인간 자체에 대한 존엄이 무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앞선 많은 나라들로부터 밀려드는 인본주의의 대두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받아들여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이는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지 못하는 소수의 집단으로 인식되어지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효율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는 사회는 시대를 역류하는 시대착오적 사회이며, 복지부재의 기득권자들의 이기심만이 방만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신의 장애는 결코 죄가 아니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게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활권, 노동권, 발달권, 교육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에 대한 법제적 접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 국가는 행정국가화 되어가는 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제화되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의 교육권 역시 법적 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

- ① "교육을 받게할 의무"(제 31 조 - 2항)
- ② "무상교육제"(제 31 조 - 3항)
- ③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제 31 조 - 4항)
- ④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제 31 조 - 5항)
- ⑤ "교육 제도의 법정주의"(제 31 조 - 6항) 를 규정하고 있다.

2) 성격

교육권의 법적 성격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 헌법조항을 통해 법적 적용을 가져올 수 없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적 조건(교육 시설의 설치, 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의 준비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내용

1. 법앞에서의 평등

제 31조는 법앞에서의 평등의 이념을 교육의 영역에서 실현하려는 조항으로,

a.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여기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는 장애아 교육을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교육 조건의 정비라는 의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b.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여기에서는 교육의 평등을 구체적으로는 취학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즉 성별, 종교, 장애를 이유로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 31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지닌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교육법을 통하여 (6, 8, 9조) 에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물론 필요한 교재와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니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취학시킬 의무를 지닌다.

3. 무상교육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무상의 범위는 학설에 따라 나뉘나 취학 필수비 무상설의 다수의견에 따라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와 기타의 교재,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제 31조 5항은 복잡하고 부단하게 발전하는 현대적 문화생활에 대처할 뿐 만 아니라 건전한 국가관 정립을 위해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교육법

1) 의의

교육법은 헌법에서 명시된 제 31조를 구체화시킨 법률로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규범을 정립하고 있다. 즉,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특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 행정의 동향이 권력행정에서 급부행정으로 변하면서 행정법 역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 즉, 평등은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여 사회국가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국민의 생존권을 배려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의 이념에서 보듯 헌법과 교육법에 바탕한 원리와 이념에 근거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입법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2) 문제점

위에서 보듯이 교육법은 입법상에서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입법상의 재량권 역시 헌법에 기속되는 재량을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일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최소제한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위배될 경우 위헌법률임을 면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교육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1.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교육법 제 8조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경우 제 98조에서 의무교육의 면제유예조항을 두어 장애아동은 사실상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장애아동에게도 취학 통지서가 발부되고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이 부득이한 질병등의 이유로 부모들의 법적 제재가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예조항을 두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헌법과 교육법의 고찰에서 보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물론 교재와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아동의 장애 정도를 진단,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한 사정 기구, 순회교육제도, 통합교육제도 등이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명문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물론 정부의 최종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의 검사 및 배치기구(사정)는 없을 뿐 더러 순회교육제도등의 ‘~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으로 정책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에 문제를 느낀듯 제 98조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학령아동이 보호수용하여야 할 정도로 장애가 심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중증장애아동은 사실상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었으며 질병과 장애에 대한 구별조치 못하는 법제정을 하고 있는 무지함을 드러냈다. 이것은

명백히 장애아동교육의 권리확보를 제한하는 교육법의 한계이며 헌법의 원칙인 비례성과 공평성에 어긋난 위헌인 것이다.

2. 특수교사 양성제도

교육법에서는 제 79조에서 교원자격이 명시되어 있고 별표로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수교사양성제도의 경우 4년제 특수교육과 졸업생 외에도 별표로서 소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특수교사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이 지난 7월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교육법에서는 특수교사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별표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건데 88년도 자격 검정시험을 통해서 보듯 교사적체 해소등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특수교사의 자질향상과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성제도에 대한 독립조항의 법제화와 더불어 특수교육진흥법 또는 시행령과 규칙에서 명백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재정의 확보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사 양성제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은 시대적 요청으로 1977년 제정, 공포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특수교육은 사실상 절대적인 행정과 재정상의 지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외국의 특수교육의 경우 특수교육진흥과 관련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공법 94 - 142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명시되어야 할 의무교육, 조기교육등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공대위 자료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첨).

실질적인 행정 계획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띤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가 제안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최종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어 있거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인 판별에 관한 제도가 없고 순회교육이나 개별화교육이니, 통합교육등의 장애인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내세워 놓았지만 임의조항등의 규정으로 그 실현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을 뒷받침할 내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물론, 자문기구가 폐지된 상태에서 특수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영향력 있는 교수,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전문가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방향)

미국의 경우 1990년 7월 미국인을 위한 장애인법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1990) 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교육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0세의 조기교육에서부터 중등 후기 교육 및 성인교육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대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1992), p.39-40에서 발췌.

1. 모든 장애학생은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9조에서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수학 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취학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권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교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 아동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차가 큰 장애 학생들을 아무런 계획없이 일반학급에 방치해 버린다면 실질적 교육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학생에게는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역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이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평등을 얻는데는 일반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일반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게 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갖게 되고, 그 태도는 비교적 오래동안 지속된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장애인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미래를 준비시켜 주며, 일반인들에게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 준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의 교육은 가능한 일반학생들과 더불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유아의 잔존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 촉진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능력은 제각기 발달의 적기를 갖고 있는데 적기를 놓치면 학습의 효과가 보장되지 못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조기교육이 더욱 중요하며, 예방교육의 차원에서도 조기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생활을 마친후의 성인기는 학령기에 비하여 2, 3배로 길다. 성인기나 노년기를 얼마만큼 건전하고 보람된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학령기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자아실현 및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므로 직업교육을 시키며 장애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부분통합을 하여 경제활동을 가능케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일반사회내의 오락을 즐기고 소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5. 자녀의 판별이나 특수교육 정책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한다.

특수교육이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 부모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다. 자녀가 판별이나 배치에서 부당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이 일반아동에 비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 나름대로의 권익옹호를 위한 압력단체로서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6. 장애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개별화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알맞은 개별화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개별화 지도에 사용되는 개별화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현재 교육능력과 상태, 장·단기 교수목표와 프로그램 시작시기와 지속시간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객관적 척도와 평가 절차 및 일정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4. 외국의 특수교육 관계 주요 법규

1) 미국의 PL. 94-142

이 법은 초, 중등 교육단계에서 장애아 교육체계를 정비, 활용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였으나 1984년 (PL. 98-199) 장애인 교육법을 통하여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이 종전의 3세에서 5세까지를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의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강화되었다. 단, 중등교육 단계 이후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기술교육, 계속교육 또는 성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PL. 94-14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조항에서 연방정부가 각 주에 있는 취학 장애 아동에게 국가적 평균 지출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지불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확립하고 있다. 연도별 증가액은 1978년 회계년도 5%인 것을 82년 회계년도까지는 40%로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예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재정 상황의 규모의 차이가 있어, 이를 접어들어도 주(州)와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살펴보면 수행해야 할 많은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 # 광범위한 아동 판별 절차의 확정
- # 완전한 특수교육 혜택의 목표와 그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한 확정
- # 완전한 법적 절차 촉구
- # 부모 및 그 후견인의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절차의 유지
- # 종합적인 인성발달의 프로그램과 절차의 유지
- # 모든 장애아동에게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절차의 유지
- #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와 평가의 보증
- # 자료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의 확정
- # 부모나 지도자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인정하고 모든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정책의 확정 등 모든 행정적 자료가 공법 94-142 하에서 요구되고 있다.
- # 개별화 교육의 경우 각 아동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시키기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며
- # 3-21세까지의 전 장애인에게 무상 공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판별, 평가조치에 관한 부분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확실히 규정되어 있다.
- # 취학전 교육에 관해서는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관련된 서비스와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주(州)를 고무시킬 것을 목적으로 주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3세에서 5세의 각 장애아동은 특별히 300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PL-142의 경우는 그의 특수교육 조기의무교육과 이후의 고용문제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법제도는 이미 1923년의 맹아학교 및 농아학교령에 의해 시, 도에 맹아학교 및 농아학교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1956년에는 24차 국회에서 '국립 양호학교 정비 특별조치법' 이 통과되어 양호학교에 있어서의 의무교육 조기실시를 목표로 하여 국립양호학교의 설치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 양호학교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건축비, 교직원의 급여, 교재비 등에 대하여 다른 공립 의무교육 학교와 같이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1974년에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중학교까지 무상의무취학을 실시했고 1979년에

는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병허약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3) 영국의 경우

'1944년 교육법'에서 이미 통합교육적 측면을 취급하고 있고, 1970년에는 '장애아 교육법'을 공포하여 중등도 교육지체아의 교육을 보건사회성에서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영국에 있어서의 의무교육제도는 1914년 '경도정신지체아 의무교육법'과 1918년 '지체장애아의 무교육법'이 공포되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현코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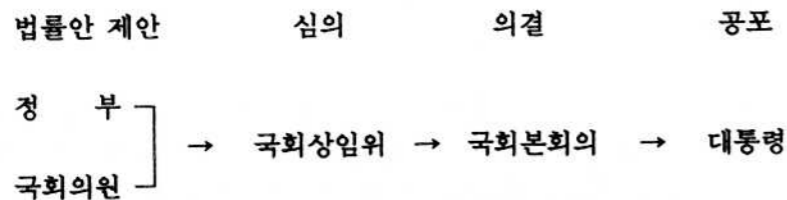
1971년 4월 1일 이후부터 장애아를 전원 취학시키고 있으며 무상의무교육의 단계는 5세에서 16세 까지로 되어있고 다만 2 - 5세 이전까지의 취학전 교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유아가 보육학급이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면 일반아동보다 장애유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Warnock (1982) 법 이후 특별한 교육적 준비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장애아들이 어떤 형태이든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5. 법적 대응을 위한 제안

위에서 현행 특수교육 관계법규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입법절차와 특수교사 양성제도의 보수교육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성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입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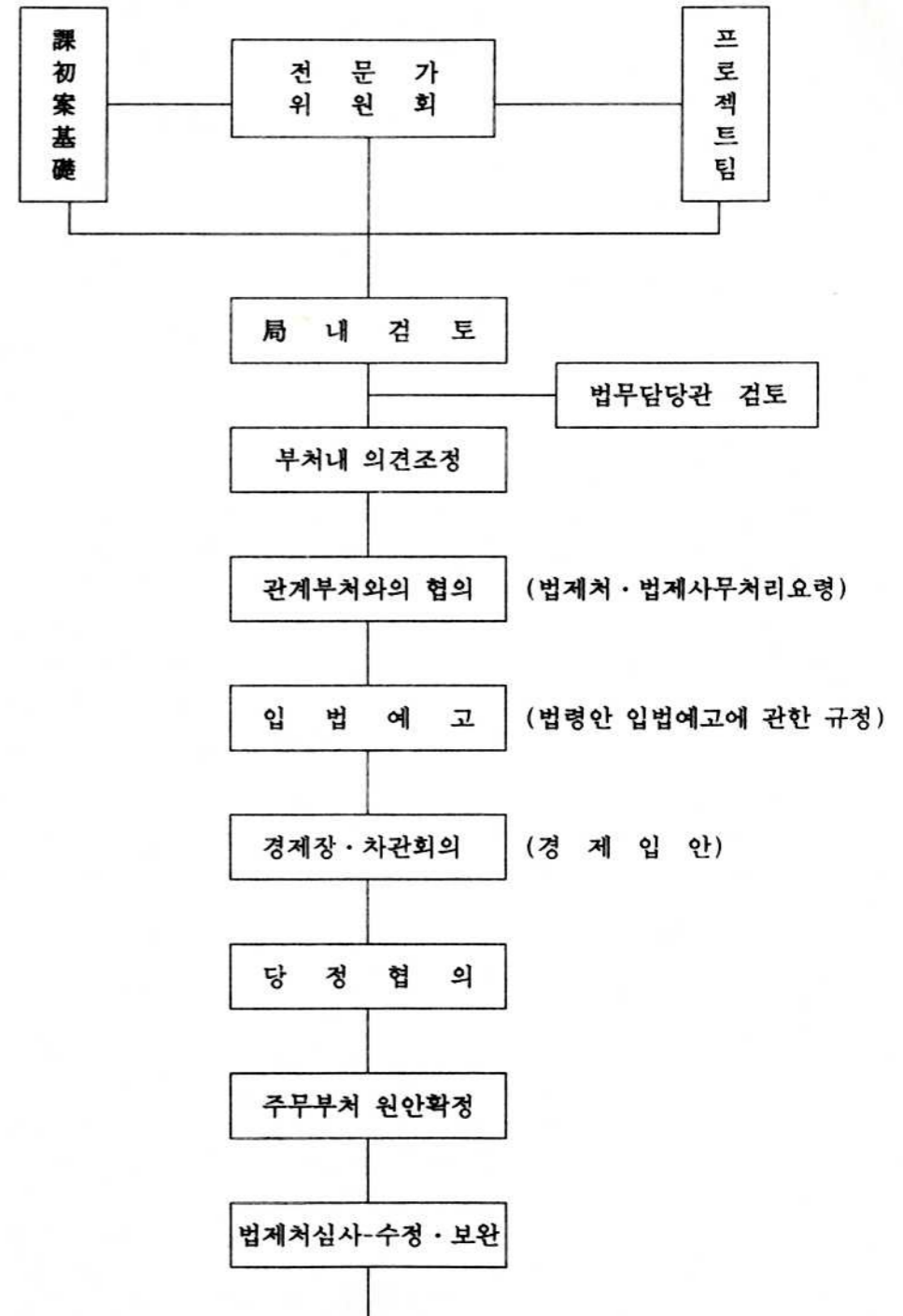
입법과정이란 일정한 입법정책적 목표아래 법률안이 기초되어 국회에 제출 또는 발의되고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국가원수의 서명, 공포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자.



1. 법률안의 제안

법률안의 제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 국회상임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다. 권력 분립에 의해 정부가 입법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남득

하기 어렵지만 행정국가화에 따른 전문성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식하고 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안이 정부의 제안이므로 이 과정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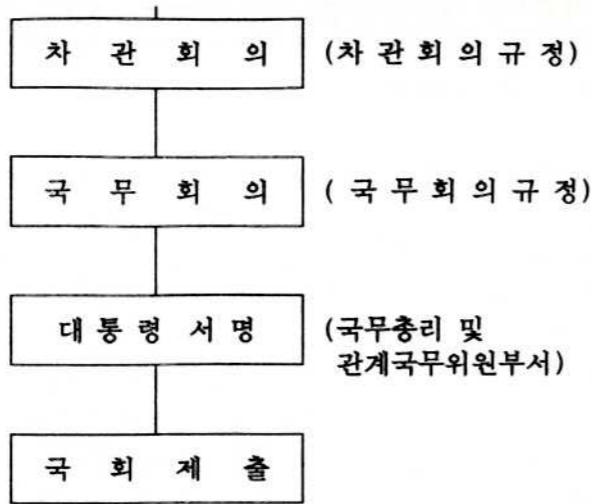


표 1 정부의 법률안 입법 과정

2. 법률안의 심의

제안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원들에게 배부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된다. 심사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올려져 표결에 붙여지며 통과 여부 묻게 된다.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상임위원회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서 모든 의안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때만 자유롭게 상정법안의 수정의 가능한데, 의안에 대한 대안 제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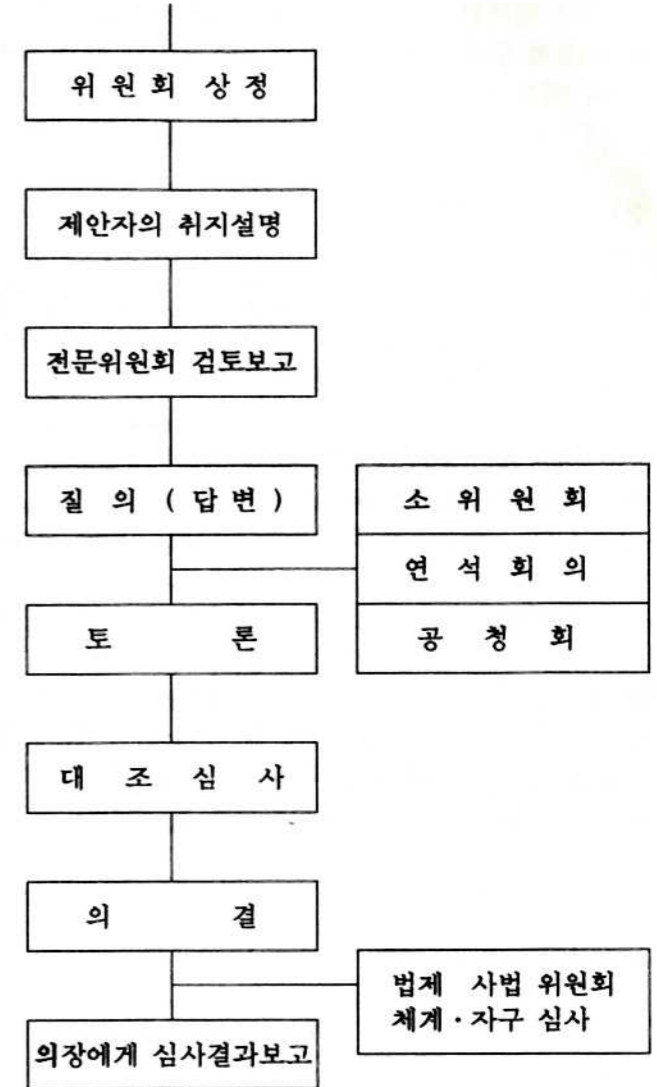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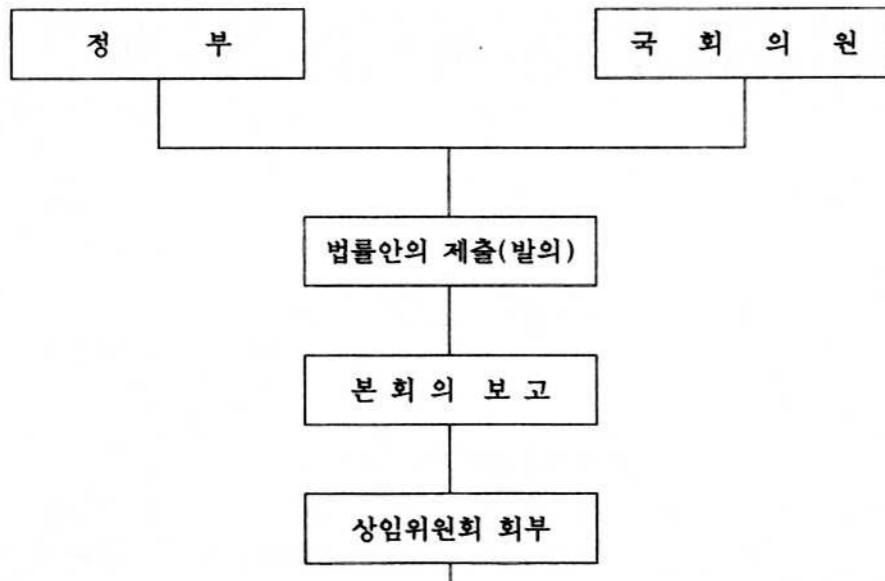


표 2. 위원회법률안 심사절차

표에서 보듯이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대조심사 및 표결순으로 이어지는데,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 참고인으로부터 증인,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는데, 각 교섭 단체 소속 위원의 의석 비율에 따라 5 -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예가 많다.

간단히나마 입법과정을 살펴본 것은 11월 하순 이후로 예정된 상임위의 심사과정에서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현 정부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

하고 명백한 반대의사와 수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여론의 조성하고 함께 우리들의 강한 의사표시를 위한 힘을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보수교육 시행령

보수교육 시행령은 사실상의 법적 하자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것은 행정부 각 부간의 전문성과 치밀성으로 위법을 물을 수는 없지만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특수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올바른 특수교사 양성제도를 법제화시키지 못하고 비전공자에 대한 특수교사 양성제도와 장애아동 교육권확보의 비교형량을 감안할 때 현 보수교육 시행령을 통한 행정행위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일탈행위임이 분명한 편익주의적이고 졸속행정이란 측면에서 특수교육 담당자와 정책 기안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 특수교사 양성제도에 대한 고찰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위에서 입법과정과 보수교육 시행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정부의 최종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특수교육진흥법은 또 어느 긴 세월 동안 정부의 개정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은 법적으로도 교육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교사는 임기응변식의 양성제도하에서 배출되어 장애아동교육권의 확보는 결국 요원하게 될 것이다.

< 별첨 >

특수교육진흥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시청각장애자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제 9 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점자, 구화 및 보장구를 사용하여 교육, 교정 (이하 요육이라 한다) 및 직업보도를 하는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제 3 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병설되는 학급을 말한다.

제 3 조 (특수교육대상자)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각장애자
2. 청각장애자
3. 정신박약자
4. 지체부자유자
5. 정서장애자
6. 언어장애자
7. 기타의 심신장애자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상반기능회복을 위한 요육
3. 특수교육대상자의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과방법의 연구, 개선
5. 특수교육담당교원 (이하 "특수교원"이라 한다)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 및 시설, 설비 (요육시설, 직업보도시설, 기숙사

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정비

7. 특수교육의 교재, 교구 및 보장구의 연구, 개발

8. 직업보도책의 강구

9. 점자도서관 등의 설치, 경영과 조성

10. 장학금, 기타 특수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의 시책을 강국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하여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무상교육)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 6 조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이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7 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그 과정별 장애의 종별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생산, 공급 및 가격 사정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 (장학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학비감면 등)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과 장학지도 및 개별지도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10 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가부 및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고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 조 (건강진단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회복 정도의 판단 (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교정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직업보도)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능력

에 따라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특수교육요원의 자격과 정원)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교원 이외에 교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요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 (특수교원 등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과 특수교육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자질향상과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 15 조 (점자도서관) ① 점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1. 점자도서의 제작
2. 점자도서의 열람 및 대출
3. 점자교육의 지도
4. 기타 시각장애자에 대한 지원

② 점자도서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며 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점자도서관의 설비·경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의 내용과 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요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포함) 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학교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 3 조 (특수교육대상자)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의 교육부안이 정하는 장애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선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의견의 진술)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 평가하는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특수교육의 진흥

제 5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회복을 위한 교육대책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 개선
5. 특수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요육시설, 직업교육시설, 기숙사 시설 포함)의 확충 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11. 기타 특수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무상교육등) ① 특수교육기관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전문과를 포함한다) 의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 7 조 (사립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용 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8 조 (학비감면 등)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9 조 (취학조건 등) ① 특수학교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조건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둔다.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 11 조 (차별의 금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

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장애를 입은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순회교육 등) ①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 13 조 (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손잡이 및 경사로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개별화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치료교육

제 15 조 (의료진단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 판정의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 조 (치료교육 담당 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요원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직업교육

제 17 조 (직업교육 여건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학부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

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 18 조 (전공과 운영) 고등학교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의 설치. 경영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류별로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7 장 특수학교 교원

제 19 조 (특수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0 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 당시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 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등의 교육을 말한다.
2. "조기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실시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조기교육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2.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
3.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통합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의 편의시설 개선
4.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조기 발견
5.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취학 및 졸업 후의 지도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함은 "특수교육판별위원회"가 이 법 제 19 조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별한 사람을 말한다.

1.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정신지체인
4. 지체장애인
5. 자폐·정서장애인
6. 언어장애인
7. 학습장애인

8. 기타의 심신장애인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 연령은 0세부터 한다.

제 5 조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시 모든 교원들이 특수교육의 소양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에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침을 세워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제 6 조 (권리교육)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모든 국민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 1 항의 규정의 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무상교육) 이 법 제 6 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법 제 143 조의 2에 의한 전공과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 8 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편의의 제공)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학지원의 거부,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지원을 할 경우 시험기간의 연장, 시험문제의 구술, 대필등 입학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체육등 모든 수업과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순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판별위원회'에서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사람에게는 인접지역의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 하여금 가정이나 병원,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순회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은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치료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한다.
- ③ 특수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교과와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하여 연 1 회 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13 조 (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해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교직원들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수교육 판별위원회

제 14 조 (목적)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하고 판별하여 장애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각급 "특수교육판별위원회 (이하 "판별위원회" 라고 한다)" 를 설치한다.

제 15 조 (구성) ① 교육부에 "중앙판별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각 도 및 직할시에 "시·도 판별 위원회" 를, 각 시·군 (구) 에는 "시·군 (구) 판별위원회" 를 둔다.

- ② "판별위원회" 는 특수교육전문가, 사회사업가, 의사, 법률가, 심리치료사 기타 장애인복지전문가로 구성하되 세부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임무) ① "중앙 판별위원회"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진단 및 판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련
3. "시·군 (구) 판별위원회" 와 "시·도 판별위원회" 의 지휘 감독

② "시·도 판별위원회"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군 (구) 판별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정밀검사 및 재검사
 2. 시·군 (구)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의 적절성 심의
- ③ "시·군 (구) 판별위원회"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견, 진단 및 판별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각급 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에 의 배치
 3. 부모상담

제 17 조 (진단·배치 청구) ① "판별위원회" 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 부모, 보호자, 또는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진단·배치에 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제 1 항의 진단·배치청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18 조 (교육기관에의 배치 및 지정) ① "판별위원회" 는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치를 위하여 각급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배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③ "판별위원회" 로부터 제 1 항의 지정을 받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 19 조 (판별기준 및 방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판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 판별위원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 (이의신청)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군 (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 의 판별 및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급 판별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시·군 (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 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급 판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정 여부를 확정시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의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21 조 (부모등의 참여) ① 판별위원회는 판별의 절차 및 결과를 부모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판별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 장 특수교육기관

제 1 절 조기교육원

제 22 조 (목적) 조기교육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심신발달을 도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3 조 (설립, 경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 경영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 24 조 (설립허가등) ① 조기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폐쇄 명령)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 3 장 1 절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 26 조 (지휘 감독) 조기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 27 조 (장학지도) 각 시·도 교육감은 당해 조기교육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취원대상의 연령) ① 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제 4 조에 해당하는 만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전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교육원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취원시킬 수 있다.

제 29 조 (조기교육원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① 조기교육원에는 원장 및 교사를 두되 교사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감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조기교육원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원감은 조기특수교육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조기특수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교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30 조 (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당해 조기교육원을 대표한다.

②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및 원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교직원의 임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조기교육교 직원은 교육감이, 이 법 제 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기교육원의 교직원 은 당해 조기교육원의 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허가를 받아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교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복무) 조기교육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특수학교

제 33 조 (목적) 교육법 제 143 조에 의한다.

제 34 조 (특수학교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분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5 조 (통학편의) ① 특수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숙사나 통학버스를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하는 특수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보육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의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특수학급

제 36 조 (목적)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7 조 (특수학급의 설치) ①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 145 조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학습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 38 조 (특수학급의 종류) ① 특수학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치하되 지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유형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2.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3.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급
4. 자폐, 정서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5. 학습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6. 기타의 특수학급

③ 장애의 정도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전일제 특수학급
2. 시간제 특수학급
3. 특별지도실

제 4 장 개별화교육

제 39 조 (목적)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각 개인의 정서, 생활유형, 학습능력, 학습습관, 지능등에 따라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환경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0 조 (개별화교육 계획) ①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 계획은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와 동의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 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 기간 및 계획서의 양식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41 조 (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 ①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 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42 조 (개별화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개별화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8명 이하로 하되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수를 현실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

제 5 장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제 43 조(진로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로교육의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44 조 (직업교육) ① 고등학교이상의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은 전문 자격을 갖춘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직업교육의 종류와 과정 및 실기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6 장 장학금과 학비감면등

제 45 조 (장학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6 조 (학비감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제 47 조 (부모교육)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의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치료, 직업등에 대한 부모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 (특수교육 연구원) 국가는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조기교육원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계획의 연구개발, 각종교재, 교구 및 진단, 판별도구의 개발, 특수교육 교원 연수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한다.

제 7 장 벌 칙

제 49 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 을 교육받게 할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 24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조기교육원을 설립한 자

3. 제 25 조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 26 조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자
5. 제 29 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자
6. 제 31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임면보고를 아니한 자

제 50 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1. 제 8 조를 위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자
2. 제 18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의 배치를 위한 지정을 거절한 자

제 51 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25 조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 26 조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자
 3. 제 27 조에 의한 장학지도를 받지 않은 자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 교육감이 부과하여 징수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자

제 2 조 : 용어의 변경 (특수교육권)

제 3 조 : 시설의 경과 조치

제 4 조 :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별 표. 조기교육교사 자격기준

자격	기준
정교사 (1급)	1. 조기특수교육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조기특수교육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정교사 (2급)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조기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조기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조기특수교육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6. 특수교육진흥법과 정부개정안 및 공대위안 비교분석

1) 세 가지 법안의 비교분석

현 특수교육진흥법		정 부 개 정 안	공 대 위 안
조항	문제점		
< 1 조 > 목적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 특수교육이념을 상실하였다.	제 1 조 (목적) 교육기회균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이라 하여 사회통합측면에서 좀 더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	제 1조 (목적) 교육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있다.
< 2 조 > 용어의 정의	특수교육의 용어정의에서 '점자·구화 및 보장구 사용' 이란 용어는 분리교육에 치	2 조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순회교육, 통합교육, 치료교육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다.	

	중한 용어. 특수교육기관에 조기교육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 3 조 > 특수교육 대상자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바꾸어야 하고 특수교육대상범위도 넓혀야 한다.	제 3 조 학습장애가 포함되었으나 자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진단·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돌려놓고 있으며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가 주어졌다.	제 4 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폐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연령을 0세부터로 하고 있다. 진단·평가를 판별위원회에서 언급되고 있다.
< 4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열된 시책이 추상적이며 조기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예산확보도 임의규정화 되어 있어 실현이 불투명하다	제 5 조 현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제 3 조 예상의 우선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 5 조 > 무상 교육	무상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 6 조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기교육실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 7 조 제 6 조 이 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 3세부터인데 만 3세면 조기교육의 의미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만'을 빼는 것이 좋을 듯하다.
< 6 조 >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	역시 임의조항으로 실현이 불투명하다.	제 10 조 현행법 6조와 동일 (좌)	제 13 조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등의 보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가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 7 조 >	통합교육차원에서 '교육법'	삭 제	제 11 조 특수교육기관의 교과용도

교육과정 및 교육용도 서	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 8 조 > 장 학 금 지 급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삭 제	제 45 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 9 조 > 학비감면	학비감면보다 그 학생의 능력에 맞는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에 필요한 제반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 8 조에서 언급하고 제 9 조에서는 취학조건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 46 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 10 조 > 불이익처분 금지등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 11 조 단서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교육법 제 98 조의 유예조항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제 8 조 수업보조도구의 설치조항이 있다.
< 11 조 > 진단검진	제 1 항에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회복 정도의 판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어 버렸다.	제 15 조 제 2 항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에서의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 16 조 제 2 항과 제 3 항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12 조 > 직업보도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제 17 조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며 제 18 조에서 전공과의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제 43 조와 제 44 조에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다.

		시행규칙에서 시설기준,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	
< 13 조 > 특수교육 요원의 자 격과 정원	치료교육이란 용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일반교원과의 동등한 대우가 중요하다.	제 16 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언어·물리·작업·청능·실리치료교사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10 조 정부개정안과 동일
< 14 조 > 특수교원 등의 자질 향상	특수교원 등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수교원이란 용어보다는 특교육교원이라는 용어가 더 좋을 듯하다.	제 19 조에서 현행법과 동일	제 12 조 연 1회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 조 > 점 자 도 서 관	'도서관 진흥법'에 준하는 조항이 있어서 서로 동일한 도서관을 놓고 상이한 조항이 생기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삭 제	
< 16 조 > 시 행 령		제 20 조에서 권한 위임	

2) 신설조항의 비교분석

특수교육진흥법 정부개정안	공 대 위 안
제 12 조 순회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제 9 조 순회교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13 조 통합교육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제 5 조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제 6 조에서는 권리교육이라 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제 48 조에서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제 14 조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 39, 40, 41, 42 조에서 목적, 계획, 계획위원회,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다. 학급당 인원수는 8명이하로 하고 있다.
	제 2 장 특수교육판별위원회 제 15 조 구성에서부터 제 21 조 부모참여등의 부분까지 비교적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다. 이 때 판별위원회라는 용어보다는 사정(Screening) 위원회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듯하다.
	제 3 장 특수교육기관 제 1 절 조기교육원 제 22 조 목적에서부터 제 31 조 교직원 임면까지 잘 구성되어 있다. 제 24 조에서는 '설립허가' 라고 하여 허가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등 학교기관이 인가제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신고제와 인가제의 장단점도 있지만 조기교육원의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가 더 좋을 듯하다.
	제 28 조에서는 취원대상의 연령이 1항과 2항에서 모순이 생기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자구해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기유아교육으로 유치원의 기준을 적용시켜 만 3세라고 정하기 보다는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조항자체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 48 조 특수교육연구원 국립특수교육연구원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언급과 목적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고 영향력 있는 전문기구 구성조항의 신설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기회의 균등과 보장

19세기말 근대적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번영과 방위의 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어 소위 이 때부터 國民皆學 정신에 입각한 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어 왔다. 이와같은 국민교육제도가 확립된 이래, 오늘날 각국은 국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이제 교육은 國家公企業의 주요사법이 되고 있다.

초기의 의무교육제도는 대개 外形法制的인 것에 불과하여 주로 교육의 量的인 보급과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소위 文盲을 퇴치하는 정도에서 만족해 왔다. 그러나 의무교육제도가 量的으로 어느정도 확충되자, 이와같은 교육의 질적 개선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아동의 교육에도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의무교육이 확립되기 이전까지의 특수아동 교육은 주로 종교적 자선이나 시혜적 관점에서 이들을 기숙제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여 보호와 교육을 병행해 온 것이 가장 주된 형태였다. 특수아동을 위한 공교육권의 실현이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국가의 공교육정책과 관련한 행정적 요구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장애의 정도와 종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권의 보장에 대한 의식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접어들어 이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와 그 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법정투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하였다.

1. 허용적인 평등에 입각한 기회균등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00여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잘못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사회의 잘못된 장애인관 때문에 장애 관련 시설이 건립되지 못하거나 오지로 내쫓긴 사건들을 들 수 있다. 부산 정효원 (1986), 전남 덕산 장애인재활

센터 (1987), 신망에 재활원 (1987), 인천 사랑의 집 (1987), 부산 장애인 복지관 (1987), 강서재활원 (1987), 부산 해남학교 (1988), 천안 동대의 집 (1990), 천안 인애학교 (1991), 마장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1992) 등이 지역 이기주의와 잘못된 장애인관 때문에 건립되지 못하거나 오지로 쫓겨났다.

2. 교육의 보장에 있어서의 평등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 11조 1항과 동법 제 31조 1항에 국민 모두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아동의 교육현실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특수아동이 교육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¹⁾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정비율의 수학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입학할 허용하도록 한다. 장애인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정원외 이더라도 일정비율의 수학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입학할 허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학능력 유무의 판단은 해당대학에서 입학시험성적을 입학시험 합격자의 성적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진흥법 중 불이익처분의 금지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의 내용 중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학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감독청으로부터 입학시험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승인받아 장애자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할 거부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대학이 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장애자의 입학지원이나 입학할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처분의 금지조항 내용중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에 있어서 특수아동의 상태는 열악하다. 헌법 제 31조 2항에 있는 규정과 교육법 제 8조에 1,2,3항, 동법 제 96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의무교

1)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 대상자의 취학율(유치부제외)

대상	시각장애아 청각장애아 정신지체아 지체장애아 정서장애아				
백분율	40.31	34.40	42.33	18.81	7.56

특수교육논총 제5집(서울:한국특수교육학회, 1989), p.3에서 발췌

육을 받아야할 권리와 의무를 지게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를 지게되어 있다. 그러나 윤점룡의 자료에 의하면 특수아동 추정수 348,839명중 국민학교과정 특수교육수혜자 수는 34,528명으로 전체의 19.17% 밖에 교육받고 있지 못하다. 특수아동이 이렇게 의무교육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법 제 98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2조는 아동의 신체적 상태를 감안해 의무교육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특수아동의 교육 기회를 막는데 큰 작용을 해 왔다. 즉 국가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특수아동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육기회의 박탈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3.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특수교육에 있어서 결과의 평등이란 보상교육 의미의 평등이다. 특수아동의 특수한 요구에 따른 보상교육에 필요한 영역으로는 관련서비스, 조기교육, 부모교육, 통합교육 등이 있다. 여기서는 관련서비스와 부모교육만을 다루고 통합교육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에 있어서 관련서비스의 지원은 중요하다. 관련서비스란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개 아동의 장애를 특별히 교정하거나 보상해 주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적 훈련, 사회·심리적 훈련, 언어훈련, 작업훈련, 직업보도에 필요한 서비스 외에 수송, 장애진단과 평가, 의료 및 보건, 부모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문제점은 관련서비스를 수행할 전문인의 자격, 양성, 활용 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에 특수교육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 17조 1항의 자격기준에서 필요한 전문인을 한정시켜버린다.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관련 전문인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교육법에는 특수교육요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위의 보장이 미흡하다.

2. 부모교육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유아기부터 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을 따로 마련하는 것보다 특

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신교육과 순회교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를 위한 항시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통합교육

1. 통합교육의 이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지닌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하나의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이나 어떠한 영역에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이나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일부학자들은 통합교육의 문제를 공공정책에 있어 철학적 기본과정이고, 하나의 도덕적 결단의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을 그들의 학습능력에 알맞도록 제한된 환경을 극소화시켜 교육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통합교육은 '특수'와 '정상'이라는 표면적인 낙인을 지우고 특수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이 사회로부터 고립, 거부 당하는 것이나 그들이 사회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해소시키며 상호관심과 지원을 통해 소속감과 수용감을 증진시켜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게 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육 운동은 정상화의 원리와 분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화의 원리란, 모든 장애아동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소제한 환경에 아동을 배치하여 정상아동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호작용 없이는 정상아동들과 장애아동들은 서로의 상호관계나 수용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특수아동이 일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특수아동보다 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특수반이라는 낙인 때문에 일반아동으로부터도, 교사들로부터도 소외를 받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관련서비스의 지원과 졸업 후의 진로대책이 없는 특수학급의 운영은 일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특수아동보다 고립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학급교사들의 인간적 이해가 없는 특수반의 운영은 짐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게 된다.

2. 외국의 통합교육

70년대 이후 선진국의 특수교육은 모든 장애아에게 적절한 공교육

권을 보장하는 일, 가능한 한 특수아동의 교육을 일반아동을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 이상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 불공평한 평가로부터 특수아동을 보호하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① 미국의 통합교육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은 다섯 가지의 형태가 있다.

- ㉔ 일반학급내 원조 방식: 일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아동을 특수교사가 원조해주거나 교구를 제공해 주는 것.
- ㉕ 방문교사 방식: 일반학급에 방문교사가 1주에 2~3시간 수업하는 것.
- ㉖ 자료실 방식: 일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아동이 1~2시간 정도 자료실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소집단으로 수업하는 것.
- ㉗ 협력 방식: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아동이 일정시간 일반학급에서 학습하는 것.
- ㉘ 교류 방식: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많은 활동을 일반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것.

이러한 여러가지 방식에서 중도와 중등도 정신지체아와 농아는 제외된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통합교육의 추진에는 일반학급의 교육방법, 내용의 변혁이 필요하며 교원양성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② 영국의 통합교육

영국에서는 통합교육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 ㉔ 공간적 통합: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같은 부지내에 위치시키고 일반학교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
- ㉕ 사회적 통합: 식당과 운동장 시설을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며, 공동수업 이외의 활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서로 교류하도록 하는 것.
- ㉖ 기능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일부 또는 쉼 시간을 일반학급의 활동에 참가시키는 것.

③ 독일의 통합교육

서독의 교육심의회에서는 1973년에 통합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㉔ 특수교육의 특별양성과정을 마친자가 일반학교에서 교육할 것.
- ㉕ 교사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을 개선할 것.

- ㉔ 일반학급에서의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일반교사 외에 특수교육교사나 보조교사의 배치를 고려할 것.
- ㉕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육자제를 정비할 것.
- ㉖ 장애아를 위한 특별한 시설 설비를 할 것.

이를 위하여 협력학교센터라는 제도를 구상하였다. 이것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두 종류의 학교가 동일 내지 근접 부지에 설치되고, 두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 의한 시설설비의 공동이용, 합동조직의 결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학교에는 내적 분화를 위해 촉진수업, 촉진코스, 장애 고유의 치료를 위한 조직이 편성된다. 일반학교의 교수에 완전히 통합된 장애아는 일반교사, 특수교사로부터 장애에 따른 요구에 대한 원조를 받지만 학적은 일반학교에 두고 있다. 부분통합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는 양교의 대표로부터 교무회의에 의해 통합범위, 영역을 결정된다.

일반학교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㉗ 필요한 원조를 받으면서 쉰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학습한다.
- ㉘ 일반학급에서 학습은 하지만 일부학급은 특수학급단위에서 학습한다.
- ㉙ 특수학급단위에서 학습하지만 일부의 시간은 일반학급에서 학습한다.
- ㉚ 쉰 시간을 특수학급단위에서 학습하며 일반학급과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3. 誤導된 통합교육의 의미와 현 상황의 문제점

통합교육이 모든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으로 보내는 것, 특수아동의 보충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 없이 일반학급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 중증의 장애아를 위한 학교 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특수한 요구를 가지는 학생에게 밀도높은 교육을 마련해 주는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 통합교육이다. 즉 심리적·사회역동적·인격적 통합을 의미한다. 물리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하기만 하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㉑ 장애아를 더욱 제한적인 환경으로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㉒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조롱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㉓ 장애아 자신도 일반아를 긍정적으로 수용, 이해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어렵게 하는 장애는 첫째, 법적·행정적 관리제도가 일반/특수로 이분화되어 특수아동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서 일반교육계의 무관심이 촉진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가장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을 완전히 구분하여 보려는 문화적인 선입견 때문이다. 셋째,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지식과 기능위주

의 학문적인 풍토에서는 특수아동이 통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특수아동이든 일반아동이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질적인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넷째, 교육현장의 문제이다. 즉,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나 특수한 시설, 관련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이 확보되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러한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5. 사정위원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위해서 사정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판별위원회 제도는 단지 각급 학교 단위의 선생님이 입학할 아동을 사정하는 정도이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제 3 조 1항) 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진단, 평가 및 선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어떤 구체적인 명시없이 언급하고 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의 조기진단 및 평가 그리고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매우 중요시하여 0세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너무나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정위원회의 구성은 중앙 사정위를 비롯 각 시·도 사정위와 시·군·구 사정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앙 사정위는 사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며 시·도와 시·군·구 사정위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 사정위는 시·군·구 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정밀검사 및 재검사와 시·군·구 사정위의 사정 및 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시·군·구 사정위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견 및 사정을 하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정도(특성)에 따른 각 교육기관에의 적절한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부모와의 상담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일정주기를 두고 정기적인 사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교육기관의 배치에 있어 각 교육기관은 사정위의 배치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위의 구성원들은 특수교육전문가, 사회사업가, 의사, 심리치료사, 법률가 그 외 장애인복지에 관계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구성원들에 관한 자격기준 등이 상세히 언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정위의 사정기준 및 방법은 각 전문가들과 중앙 사정위의 의견에 의해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과 동의가 필요

로 하며, 사정의 과정과 결과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 공개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대 안

우선, 법적·제도적으로 조기교육과 무상의무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교육법 제 98조 유예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주지,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또한 조기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군 판별위원회를 강화하여 취학하여 취학대상 장애아동을 적절한 교육환경에 배치하여 취학 통지서에 판별에 대한 안내 및 국민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법적으로 강행규정화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 양성, 활용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아동의 교육권과 교육의 질은 일반아동과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며, 특히 일반교사와 일반인들의 인식이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 조기 의무교육을 위한 제언

1. 조기의무교육의 필요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인지발달이 유전적 소질과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발달심리학자들의 주장과 학습에 있어 결정적 시기가 있어 이 시기에 필요한 자극을 주면 아동은 힘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보충학습을 한다고 해도 뒤떨어진 능력을 몇배나 더 어렵게 보충해야되며 학습의 효과도 낮다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그 원천을 들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유아들을 조기교육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운동장애나 정신, 감각장애가 있는 유아는 그 장애로 인해 다른 기관까지도 악영향을 받아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된 능력이나 적절한 시기에 그 활용도와 교육적인 자극을 통해 2차적인 장애를 예방하여야 하며,

둘째. 장애발견 즉시 치료 및 교육을 시작하면 늦게 시작한 경우보다 훨씬 그 효과가 크며, 따라서 경제적 비용면에서도 절약이 된다. 정신지체의 경우, 중도정신지체는 전체 정신지체의 10%정도로 나머지 90%정도의 경·중도 정신지체아들은 조기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중 상당수가 일반교육으로 통합이 되어 사회적응력이 향상되어 덜 보호받고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특수학교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어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교육 및 부모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유아에게 풍부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발달을 촉진시켜 장애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장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를 예방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아동 조기교육의 현 상황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은 대략 232개 (1993.3 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의 교육 및 치료기관이 있으며, 그 중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를 위한 특수학교 유치부가 40개교에 설치된 전체 조기교육기관의 17.24%인데, 전체 60학급에 462명 (9.7%)의 특수유아가 교육받고 있으며 복지관 및 공공단체 부설 조기교육기관 27개 (11.64%)에서 약 500명 (10.5%) 정도의 특수유아가 교육 받고 있으며, 종교단체 부설, 종합병원, 대학 부설의 32개 (13.79%)의 조기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 있는 특수유아가 약 800명 (16.8%) 정도이고, 기타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133개 (57.33%)의 사설 조기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특수유아의 수가 3,000명 (63%) 정도로 총 4,800여 특수유아들이 교육 및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교육기관과 개인지도들을 추산해 볼 때, 전체적으로 대략 5,300명에서 5,500명 정도의 특수유아들이 전문적 교육 및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특수유아 10만 내지 12만명 중 반드시 전문적 특수교육 및 치료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특수유아를 5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5,500명은 불과 10%밖에 되지 못하는 숫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만 3세 이후 비교적 장애가 심하지 않은 특수유아들이 주된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나이가 만 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심한 특수유아들은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집안에 방치되어 거의 교육 및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기관 중 학교 유치부의 경우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관과 공공단체 부설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종교단체 부설, 대학 부설 및 개인이 설립한 사설 조기교육기관의 경우는 일체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교육기관의 5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설립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전액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유아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재정 및 운영실태가 형편없이 빈약하다.

(표2) 특수유아조기교육 기관 분포 및 재학 아동 수

구 분	학교유치부	복지관	공공단체	종교단체	종합병원	대학부설	개인	계
서울	6	6	5	7	2	2	54	82
부산	1	1	3	2			11	18
대구	4			1			7	12
인천	2			3			8	13
광주	2	2	2	2	2		8	18
대전	1	1		2			9	13
강원	3	1			1		2	7

경 기	5	1		3			14	23
경 남	2		1				4	7
경 북	4						5	9
전 남	3			1			2	6
전 북	2	1	2	1		1	5	12
충 남	1			1			1	3
충 북	3	1		1			2	7
제 주	1						1	2
계	40	15	12	24	5	3	133	232
%	17.24	6.47	5.17	10.34	2.16	1.29	5733	100
설립별 %	28.88			71.12				
아동수 %	462(9.70%)	500(10.50%)	800(16.80%)			3000		4,762

1991년 한국 특수교육협회에서 발간한 '특수교육요람'에 의하면 전국의 공·사립 특수학교 유치부는 100개 학급이 설치되어 752명의 장애를 지닌 유아가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장 출현율이 많은 정신지체아동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겨우 371명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조기교육 기회의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 현안 문제인가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무인가 사설 특수아동조기교육기관의 숫자는 무려 7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특수학교 유치부에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아동의 숫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외국의 조기교육 실태

미국의 특수아동 교육법 (P.L 94 - 142)

공법 94 - 142는 연방정부가 각 주에 있는 취학장애아동에게 국가적 평균 지출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지출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확립하고 있다.

연도별 증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8년 회계연도 ----- 5%